

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 (2차)

2022.3.29.

□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주요 변경사항

- 코로나19 검사체계

- PCR검사 대상자 : 60세 이상, 역학적 연관자, 의사소견자, 감염취약시설종사자 선제검사, 신속항원검사·응급선별검사 양성자,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
- 60세 미만,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은 선별진료소,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
- (※ 단,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결과확인서 발급 중단되어, **공결 등의 증빙자료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**하여야 함)

-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

구분	조치사항
확진자	· 접촉력과 관계 없이 7일 격리
접촉자 (재택치료자 등거인 포함)	· 7일 수동감시(격리면제) · 3일 내 PCR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

-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(2022.2.19.)
- 접촉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잠정 중단 (2022.3.1.)
-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(2022.3.1.)
- 민간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시 확진자 분류(2022.3.14.)

1. 등교(출근) 제한 대상자

- 코로나19 의심증상자
- 자가격리 대상자
-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 후, 검사 결과 통보 전인 자

2. 확진자 발생시 대응

○ 보고체계

- 확진자 발생(학생,교수,직원) → 각 전공(학과) 및 소속부서 신고 → 각 단과대학 및 소속부서 취합 → 학생보건실로 업무연락 송부 → 학생보건실에서 교내 확진자 취합하여 감염병 예방·관리위원회 보고
-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(또는 출근) 중지
 - 격리기간 : 검사일부터 7일간 격리, 8일째 격리 해제

- 예) 4월1일 검사시, 4월7일까지 격리, 4월8일부터 격리 해제되어 등교(출근) 가능
- 확진자 발생 학과 강의실(실험실) 및 사무실 **자체 일상소독**
 - 아래 ‘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교내 관리 기준’ 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신속항원 검사 권고
 - 확진자 격리통보서(또는 확진문자) 소속 학과(부서)에 제출
 - 확진 학생의 경우 공결, 교직원의 경우 재택근무

[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교내 관리 기준]

- ▶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기간
 - 확진자 증상 발생일로부터(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) 2일전
- ▶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
 -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15분 이상 마스크 미착용하며 수업·업무·대화한 경우
 - 확진자와 함께 동일 테이블에서 취식한 경우
 - 확진자와 신체적 접촉(악수 등)이 이루어진 경우
 - 그 밖에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으며,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
- ▶ 검사 실시
 -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총 2~3회 신속항원검사 권고
 - 검사장소는 선별진료소, 호흡기클리닉, 교내 학생보건실, 자택 등에서 실시
- ▶ 행동수칙
 -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
 - 등교(또는 출근) 가능하나, 타인과의 접촉 자제
 - 단독 식사
 - 대면 회의, 행사, 출장 등 자제

3. 교내 방역관리

- **건물출입 절차**
 - 건물 주출입구 발열 측정 의무에서 **자가 발열측정으로 전환 및 출입문 전면개방**
 - **등교 전 전자출입 앱 문진표 작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관리 전환**



-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기침예절 등의 개인 위생 철저
- 개인간 거리두기(1~2M)
- 일상소독 및 수시 환기
- 외부인(학부모, 불필요한 방문자, 음식배달원 등) 출입금지
-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건물 출입 불가
 - 학생보건실(043-229-8807) 및 소속학과(부서) 연락
- **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협조**

② 생활관

- 생활관 입소자격
 -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*이며, 입소하기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
 - *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
 - 완치자, 의학적·건강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관련 서류* 제출 후 입실
 - * 완치자 : 격리해제확인서(미접종자),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(접종자)
 - 의학적·건강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: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
- 입소생 확진 및 특이사항 발생 대비, 생활관 격리동(예지관) 운영
- 코로나19 검사(PCR검사, 신속항원검사) 실시한 후 반드시 생활관 담당 사감에게 보고
- 입소기간 확진시, 보건소 역학조사서 동거인 항목에 룸메이트 반드시 기입
- 입소생 전원 일일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

③ 도서관

[학내 구성원]

○ 일반열람실

- 운영시간 : 24시간 개방
- 한쪽면 한자리 띄어앉기(시험기간 양쪽면 한자리 띄어앉기)
- 소독스프레이, 소독 티슈 비치하여 개인위생 강화
- 노트북, 대학원 열람실
 - 운영시간 : 06:00 ~ 24:00
- 시네마룸
 - 운영시간 : 09:00 ~ 18:00
- 멀티미디어감상실 : 1인사용
- 정보검색라운지 : 한쪽면 한자리 건너띄어 앉기(시험기간 양쪽면 한자리 띄어앉기)
- 그룹스터디룸 : 미개방(소규모 밀폐공간으로 가림막 설치 후 순차적으로 개방예정)
- 자료실
 - 운영시간 : 09:00 ~ 20:00(시험기간 09:00~23:00)
 - 자료실 열람석 한자리 띄어앉기

[외부인]

- 졸업생 : 일반열람실 이용
- 휴학생 : 일반열람실 및 자료대출
- 부속기관 수강생
 - 자료대출
 - 평생교육원 : 클래식의 초대 - 시네마룸 이용 허용
- 기존 지역주민회원 : 자료대출만 가능
- 일반 지역주민 신규회원 가입 불가

④ 강의실

※ 교무처 학사지원팀 ‘2022학년도 1학기 수업관리 및 운영지침 확정안내(2022.2.8.)’ 참고

○ 거리두기 기준

구분	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
좌석 있는 강의실	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좌석 없는 강의실 (체육관, 발표실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
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(노래부르기, 관악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(단, 관악기 연주 전·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,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)
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(실험·실습·실기)등	강의실 면적 2㎡ 당 1명

○ 오프라인 수업시 강의실 점검 사항

주요 점검 사항	이행 여부
■ 외부인 출입제한 및 수강생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■ 책상, 손잡이,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(1일 2회 권장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■ 손 세정제, 마이크 덮개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■ 수업 전/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■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○ 방역환경 조성

- 방역관리 이행 여부 각 건물 관리자(단과대학장, 부서장 등) 상시 점검
- 방역물품(손소독제, 소독스프레이, 소독티슈 등) 비치

⑤ 학내·외 행사

○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준수

- (~299명) **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**
- (300명 이상) 원칙적 금지,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각종 스포츠 대회, 축제 등의 경우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승인 후 가능
- 추후, 변동될 수 있으므로, **집합·모임·행사 시점의 행정명령 반드시 확인**
- 행사시, 기본 방역수칙과 개인간 거리두기(1~2M 간격 또는 면적 4㎡당 1명) 준수
- 취식을 동반한 형태는 가급적 자제, 불가피한 경우 개별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

○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시 준수사항

- 학생보건실과 방역 관련 사전협의 당부
- 학생 인솔,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
- 행사 시작 전, **자가검사키트 활용한 선제검사 권고**
- 마스크 착용,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
- 취식 시 식당·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하며 가능한 개별

식사 권장 (예 : 아크릴 칸막이 설치된 곳에서 도시락으로 개별 식사)

-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금지

⑥ 동아리방

- 학생지원팀 및 동아리 연합회에서 승인 및 관리 감독 후 동아리 활동 시행
- 사적모임 인원 내에서 승인하며, 일일 2시간씩 가능

⑦ 박물관

- 개방 : 9시 30분 ~ 17시
- 동시간대 30명이하 관람 가능

4. 코로나19 관련 등교(출근) 및 보건 조치사항

구분	등교(출근) 및 보건 지침	조치사항
확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등교(출근) 중지 · 접촉력과 관계 없이 7일 격리 · 7일간의 격리 후, 별도의 검사 없이 격리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속학과(부서) 보고 · 생활관 거주자인 경우, 생활관 보고 및 격리이동 조치, 역학조사서 동거인항목에 룸메이트 반드시 기입 · 교직원일 경우 재택근무 · 격리해제 후 3일은 개인 방역에 철저 (마스크 상시착용, 단독식사, 사적모임 금지)
동거인 확진 (재택치료자 동거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등교(출근) 가능 · 7일 수동감시(격리면제) · 3일 내 PCR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타인과의 접촉 자제 · 확진된 동거인과 철저한 분리생활 · 강의 후 바로 귀가 · 교직원일 경우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 진행 · 단독 식사 · 사적 모임 금지 · 대면 회의, 행사, 출장 등 금지
교내 기준 접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등교(출근) 가능 · 교내 자체기준에 따른 접촉자 · 7일간 신속항원검사 2~3회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타인과의 접촉 자제 · 강의 후 바로 귀가 · 단독 식사 · 사적 모임 금지 · 대면 회의, 행사, 출장 등 자제

5. 코로나19 관련 공결사항(학생)

※ 교무처 학사지원팀 '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허가신청 및 승인기준 변경안내' (2022.03.24.) 참고

구분		제출서류	공결인정기간
자가격리자(확진자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격리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(1개 선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격리통지문자 - 격리통지SNS - 자가격리통지서(본인이 신청해야 발급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가격리기간동안 공결 인정함 * 자가격리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질병휴학으로 처리함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확진자 중 자가격리 해제후 이상반응 발생자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격리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(문자/SNS/자가격리통지서 중) *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/진료확인서/의사소견서 중 1개 (코로나19 관련만 인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가격리 해제일부터 최대 7일(휴일포함)까지 공결인정 가능함 (예시) 수요일 해제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* 진료당일 또는 명시된 치료기간
코로나19 의심증상자		* PCR검사결과서 또는 문자	* PCR 검사시행일 ~ 검사통보일까지 인정함
		* 신속항원검사확인서(병원 발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당일만 공결 인정함 * 보건소는 확인서 발급이 안됨 * 개인의 자가검사키트 검사는 공결신청 불가함
		* 교내 보건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관련 확인서	* 확인서 발급 당일만 공결 인정함
백신 접종자	백신접종자	*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증명서	* 2일이내(접종당일, 접종익일)
	백신접종 이상반응 발생자 (3일이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*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증명서 	* 접종당일 ~ 진단서상 치료기간 (휴일포함, 최대 3주 이내)